

Global협력센터운영규정

제정 2018.03.05 1차 개정 2018.06.01
2차 개정 2020.02.17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우송정보대학 「Global협력센터」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직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
2. 국제교류와 관련한 업무 총괄 (해외 대학 및 기관 교류 계획 수립, 해외 교류 협력업체 발굴, 기타 해외교류 업무에 관한 일반사항)
3. 해외취업형 국고사업(K-MOVE, 청해진, 글로벌현장학습)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
4.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련한 업무 (유학생 모집계획 수립 및 추진, 유학생 비자 발급, 유학생 학사관리 지원, 유학생 교육과정 지원, 유학생 생활지도 및 국내 탐방 지원, 기타 유학생과 관련한 일반사항)
5. 외국인전공 교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업무 (외국인 전공교수 채용 계획 수립, 외국인 전공교수 채용, 외국인 전공교수 업적평가 및 재임용 평가)
6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대학의 글로벌협력과 관련한 업무

제4조(조직 및 인력) ①센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③센터에는 책임교수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는 총장이 따로 위촉한다.

제5조(Global협력위원회 구성)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Global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,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부총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8.6.1., 2020.2.17.>

③위원회의 구성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, 총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글로벌 협력 및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
2. 센터운영의 예산과 결산
3. 국고 사업에 수반되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
4. 기타 글로벌협력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⑦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.

제6조(재정 및 회계) ①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.

1. 센터 운영을 위하여 본 대학에서 배정된 예산
2.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

②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